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5. 3. 8.

행정위원회

1. 審 查 經 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2월 4일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3월 2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5년 3월 7일

제111회(임시회) 제3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정진)

가. 개정이유

-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(보험·공제 등에의 가입) 규정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·공제등의 가입을 명시함.
-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등의 가입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주민등록관련 업무사고를 대비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심리적·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보험의 가입(안 제3조)
 -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
 -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함
- 보험료의 지급(안 제4조)
 -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함
- 보험금의 청구(안 제5조)
 - 보험금의 청구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
-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(안 제6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주민등록법 제20조(보험·공제등에의 가입)
- 예산조치 : 매년 세출예산에 책정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: 김찬재)

- 가.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주민등록관련 전산업무 담당도 포함되며 동별 약 3명, 총 68명의 인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,
- 나. 대상의 범위는 동별로 인구의 증감, 업무분장의 변경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의 가입대상을 규정한 조례안 제3조에서 직위 포괄계약방식을 채택한 것은 인사이동시의 재가입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대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적절한 방안이며 보험가입금액 최저 1억원 이상은 타구와 비슷한 수준이며,
- 다. 소요예산은 2005년도 세출예산서 191쪽 내무행정, 동행정운영비에 1인당 80,800원 총 5,495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,
- 라.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보험의 가입, 보험료의 지급, 보험료의 청구,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규정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審査結果 : 原案可決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의안 번호	13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2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 안 이 유

- 가.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(보험·공제 등에의 가입) 규정에
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·공제등의 가입을 명시함.
- 나.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등의 가입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기치
못한 주민등록관련 업무사고를 대비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심리적·
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.

2. 주 요 골 자

- 가. 보험의 가입(안 제3조)
 -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탈 계약
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
 -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함
- 나. 보험료의 지급(안 제4조)
 -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함
- 다. 보험금의 청구(안 제5조)
 - 보험금의 청구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세입
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
- 라.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(안 제6조)

3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주민등록법 제20조(보험·공제 등에의 가입)
- 나. 예산조치 : 매년 세출예산에 책정
- 다. 기타
 - 조 례 안 : 따로붙임
 - 입법예고 : 필요없음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(이하 "보험"이라 한다)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) 이 조례에서 "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"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주민등록증 발급업무,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제3조(보험의 가입)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보험료의 지급)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·정비하여야 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